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 및 청년정책조정실 1개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각각 1년 연장하는 한편,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21065호)됨에 따라 원활한 국무조정실 업무 수행을 위해 부처 명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2.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9항 및 제23조제6항의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조정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1조제9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를 “기획예산처”로, “기획재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2의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무조정실

조직	정원	평가기간
가. 청년정책조정실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나. 청년정책협력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 청년정책조정실 1개 과	3명 (4급 1명, 5급 2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라. 국정운영실 1개 과	4명 (4급 1명, 5급 3명)	2026년 9월 30일까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u>국무조정실</u> 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0조(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u>국무조정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⑧ (생략)	②~⑧ (현행과 같음)
⑨ 국제개발협력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u>기획재정부</u>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u>기획재정부장관</u> 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⑨ ----- ----- <u>재정경제부</u> ----- ----- ----- - <u>재정경제부장관</u> ----- -----.
제23조(미세먼지개선키획단) ① (생략)	제23조(미세먼지개선키획단) ① (현행과 같음)
②~⑤ (생략)	②~⑤ (현행과 같음)

[illegible]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18